

한국목록규칙 4판 초안의 고서목록규칙 분석

Analysis of Cataloguing Rules for Old books
in KCR4 Draft

오세훈, 광운대학교 도서관
Oh Se-Hoon, Kwangwoon University Library

남태우,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Nam Tae-Woo, Prof.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Chungang University

본 연구는 새롭게 제정된 한국목록규칙 4판 초안 중에 고서목록규칙의 내용을 분석하여 수정이 요구되는 부분의 발견과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한국목록규칙이 도서관 현장의 자료조작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는데 일조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그 결과 보완되어야 할 사항과 11개의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제시하였다.

1. 서론

한국목록규칙 4판 초안(이하 'KCR 4 초안')이 제정되었다. 이전의 KCR 3는 기술대상 자료를 단행본이나 고서와 같은 인쇄매체 자료를 주 기술대상으로 하는 제한점이 있었으나 이번에 제정된 KCR 4 초안은 연속간행물을 비롯하여 비도서자료와 전자자료 등 12종류의 자료유형과 매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정되었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KCR 4 초안의 특징으로 제시되어 있는 표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기본표목을 규정하지 않으며, 통일표목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이론(異論)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롭게 제정된 KCR 4 초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수정이 요구되는 부분의 발견과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한국목록규칙이 도서관 현장의 자료조작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실제적인 규칙이 될 수 있도록 일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의 범위를 KCR 4 초안의 고서로 한정하고, 고서의 특성을 문헌조사를 통하여 살펴보고, 기술부를 중심으로 각 조항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고서의 개념과 특성

2.1 고서의 개념

고서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살펴보면 동양에서는 古文獻, 古本, 貴重本, 古典籍, 古刊本, 稀貴圖書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서양어로는 Second hand book(古書), Old book(古書), Rare book(貴重書), Rare printed books(古刊本), Manuscripts(筆寫本, 古本, 原稿本), Rare

Book(稀貴圖書)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박문열 1999, 7).

또한 고서의 개념을 裝訂의 형식으로 정의하면 “장정의 방식이 線裝本 등 동양고유의 것으로 되어 있고 일정한 시기 이전에 간행 또는 필사된 冊”(사공철 외 1996, 28)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시기적인 사항으로 규정하면 “大韓帝國(1910) 이전에 刊印 筆寫된 東裝本”(국립중앙도서관 2000, 1)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중국의 경우 1911년(辛亥革命), 일본의 경우 1863년(明治維新) 이전에 간행 또는 필사된 서적을 의미하고 있다.

2.2 고서의 형태적 특성

자료의 形態記述은 각 자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고서는 다른 자료에 비해 실제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현영아, 1991, 275-278).

(1) 고서는 裝訂의 종류부터 특이하다. 일반적으로 책자형태는 물론 장정이 竹簡木牘(죽간목독), 두루말이, 첨장 또는 선풍엽, 호접장 등 장정의 종류가 다양하고 특이하다.

(2) 고서는 重刊 補刻 覆刻(복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原刻 또는 비교적 초기의 간행 기록만을 그대로 轉載(전재)하고 있는 등 刊印年度가 정확하게 표시된 것이 드물며, 版種이 다양하다.

(3) 또한 동양의 고서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板式 중의 하나인 黑口와 魚尾를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혹구는 판심의 上下象鼻(상하상비) 중심에 있는 혹종을 말하는 것이고, 魚尾는 혹구와 더불어 한 쌍이 되어 간본의 시대적 특징을 나타내 주고 있으며, 또한 어미 자체만의 변천에 의해서도 간본의 시대적 특징을 대강 알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4) 고서의 異板本을 대조하는데 있어 책의 외형적인 크기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는 匏郭을 특징으로 들 수 있는데, 광곽은 판의 四周를 둘러싼 線을 말한다. 광곽이 중요한 이유는 동시에 印出된 책이라고 하더라도 종이의 크기에 따라 책의 크기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광곽의 크기만은 일정 불변하기 때문이다.

(5) 界線은 지장의 각 행간을 구분하기 위하여 그은 선을 말하는데 이 역시 이판본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상과 같이 고서는 인쇄방식이 현대의 일반 도서와 다르기 때문에 한 저작의 여러 이판에 대한 식별과 함께 간인년 추정의 올바른 입증을 위하여 고서 특유의 물리적 제 특징이 세밀히 기술되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3. 고서목록규칙 분석

본 연구는 새로 제정된 KCR 4 초안이 도서관 현장에서 실제적인 기술규칙으로 활용되는데 일조하기 위하여 고서목록규칙에 나타난 문제점 분석과 수정되어야 할 사항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 통일표목

통일표목이란 동일한 저작이 서로 다른 본서명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를 저작을 한 곳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들 서명을 통일시켜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최정태, 양재한, 도태현 1999, 109). 이러한 통일표목은 자료검색의 실마리를 제공하며, 자료 배열의 기준이 되기도 하며, 특정 저자의 저작이나 특정주제에 관한 저작, 특정종류의 문헌들과 같이 공통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관련자료들을 함께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

금번 KCR 4 초안에서는 각종 표목의 개념이나 기본표목을 규정하지 않고, 통일표목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중 통일표목의 예를 들면 “전통적인 통일표목의 개념을 목록에서 배제하고, 동일 접근점의 상이한 형식간을 서로 연결하게 되면 동일한 검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2002, ii)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말하는 ‘동일 접근점의 상이한 형식간을 서로

'연결'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구체적인 제시가 없다. 다만 자동화목록에서 전거통제를 통하여 접근점을 상호 연결한다는 의도로 판단된다. 이러한 필자의 판단이 옳다면, 현재 우리나라 일선 도서관에서 전거화일을 완벽하게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는 도서관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또한 전거화일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표목이나 통일표목을 적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가 의문시된다.

그 이유는 편목자가 표목의 선정과 형식을 결정하는 대신 전거통제화일에서 접근점의 상이한 형식간을 상호 링크하기 위한 노력과 비용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앞서 통일표목의 역할에 대해 언급한바 있지만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 청구기호를 구성할 때, 동일한 분류번호내에서 자료의 배열기준이 되는 도서기호는 기본표목이나 통일표목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이명동서(異名同書)가 많은 고서의 경우¹⁾ 통일서명의 기능이 한층 더 중요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온라인 목록이 활용되면서 기본표목이나 통일표목 등의 선정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서술한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기본표목을 규정하지 않는 것과 통일표목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신중히 접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정보원의 우선 순위

고서의 서명은 표제지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에 대신하는 것이 卷首題이다. 권수제 이외에도 卷尾題, 서·발제, 목차 앞 서명, 제첨판심제 등이 있다. 또한 고서의 서명 중의 또 하나의 특징은 異名同書가 많아서 이러한 사항

을 유의하여야 한다(강순애 1996, 104).

4.0.3.1에서 1. 권수제면, 2. 표제면, … 7. 권리제면 등으로 정보원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7의 권리제면이 1항 권수제면 다음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보통 古書에서 완전서명이 기재되는 곳은 권리제면과 권리제면(권말제면)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略書名이 기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서의 완전한 서명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 권리제면', '2. 권리제면'의 순으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3 역조 및 국적에 대한 사항

4.1.6.2 1)에서 “저자의 歷朝나 國籍”은 고서의 정리에 있어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그 기재를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실 이용자의 입장에서 저자의 국적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고서에서는 저자의 역조나 국적이 기재되지 않은 것도 많고, 이를 확인하여 기재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으로 기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생략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3.4 외국에서 간사된 자료의 국명 표시

4.2.1.2 6) 바)의 경우 “외국에서 간사된 자료는 판종 다음에 국명이나 歷朝名을 원괄호로 묶어 ‘木版本(中國)’, ‘鉛活字本(日本)’식으로 기술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판종 표시에 국명을 함께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4.4.1.2 1)에서도 일부의 경우는 국적을 기술하게 되어 있어 국적의 표시가 중복되게 기술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사실 자료의 국적표시는 판종표시에서 보다는 ‘간사지’에서 기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4.2.1.2 6) 바)의 외국자료 국적에 대한 표시를 삭제하고 이를 “간사지”에서 일관성 있게 기술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4.4.1.2 1)에서 “간

1) 고서에 이명동서가 많은 것은 서명을 임의로 붙이는 경우가 있고, 같은 책에 있어서도 권리제, 권리제, 표제, 이제 등 임의로 다양하게 붙인 경우가 있으며, 移寫 또는 간행할 때도 서명을 통일성 없이 그대로 베낀 테서 연유한 것이다.

사지가 확인 또는 추정되지 않는 경우… 중국의 것은 歷朝名…, 일본의 것은 모두 ‘日本’이란 어구를 각괄호로 둑어 기술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간사지의 여하에 따라 국적이 표시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외국에서 간사된 것은 모두 간사지 앞에 간사국명을 기술해주면 매우 간단해지며, 고서의 국적별 검색도 쉽게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4.4.1.2 1)을 ‘외국에서 간사된 것은 모두 간사지 앞에 간사국명을 앞세워 기술한다’라고 수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5 版心이 없는 책지에 대한 匡郭의 크기

4.5.2.2 2)의 (5) “판심이 없는 冊紙의 匡郭의 크기는 卷首(본문) 첫 張 全葉의 內線 안쪽을 기준으로 세로와 가로를 채어 위와 동일한 형식으로 기술하되, 匡郭이란 語句는 생략한다. 예) 四周雙邊 $21.0 \times 33.7\text{cm}$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광곽의 크기는 용지 한 장의 全葉(양면) 또는 半葉(한면)의 四周邊欄(사주변란)의 縱橫(종횡) 길이를 앞세워 기재하는데 이 경우만 광곽의 양면 크기를 기재하는 것은 매우 어색하며, 광곽이란 어구를 생략하는 것도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심이 없는 책지의 광곽의 크기에 대해서는 세로길이(높이)는 반엽의 내선 안쪽을 기준으로 상하의 길이를 기술하고, 가로길이(폭)는 판심이 없는 관계로 卷首(본문) 첫 장 반엽의 내선 안쪽부터 中縫(중봉) 선까지의 길이를 채어 기술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반엽의 내선 안쪽부터 중봉 선까지의 길이는 실제적인 반엽의 가로길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류부현 1999, 75) 아울러 광곽이 없는 서적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6 귀중본에 관한 규정의 보완

고서는 모두가 귀중한 자료이지만 특히 저작

의 역사성, 간행과 필사의 역사성, 수량의 한정성, 장정의 특이성, 재화로서의 경제성, 학술연구의 原資料로서의 가치 등에 해당하는 귀중한 貴重本의 경우 이를 나타낼 수 있는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국가 또는 도서관 자체에서 지정하는 국보급이나 귀귀중본의 경우에는 관리적인 측면이나 국가 문화재 보존의 차원에서 열람방법이나 이용자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용자가 자료의 검색과정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고서가 귀중본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서에는 사용하지 않는 ‘4.3 자료특성사항’에 보완을 하는 방법이나 ‘4.7 주기사항’에 ‘귀중본’이라는 표기를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7 기타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KCR 4 초안 고서기술규칙에 나타난 용어사용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된 점과 기타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제4장의 제목이 ‘고서와 고문서’라고 표기되어 있고, 편찬보고에는 ‘11장 필사자료와 고서’, 차례에는 ‘11장 고서와 고문서’로 표기되어 있는데 장과 제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4.4 간사사항’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제1장 총칙에서는 ‘발행사항’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4.0.3.2의 4항, 4.0.4 4), 4.4.0.1 ①-③에서 도 ‘간사’와 ‘발행’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발행사항으로 일관성 있게 수정이 요구된다.

(3) 2페이지 차례에서 4.5.1과 4.0.4 5)의 가)에서는 ‘면장수 또는 권책수’로 표기되어 있는데, 4.5.1에서는 ‘장정형태와 면장수 또는 권책수’라고 표기되어 있으므로 차례의 4.5.1과 4.0.4 5)의 가)항을 장정형태와 면장수 또는 권책수로 수정이 요구된다.

(4) 2페이지 차례에서 ‘4.5.2 삽화류표시’라고

표기되어 있고, 4.0.4 5)의 나) ‘삽화표시’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를 삽화류 및 판식표시로 수정이 필요하며, 아울러 4.5.0.1 ② 기타형태사항 또한 동일하게 수정이 요구된다.

(5) 4.0.3.1의 15번 항에 ‘그 고서’를 ‘해당 고서’로 수정하는 것이 내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4.0.3.2의 2)항의 ‘채기표시’를 ‘책임표시’로 수정이 요구된다.

(7) 4.0.4 6)의 라) 총서의 ‘책임자표시’를 ‘책임표시’로 수정이 요구된다.

(8) 4.1.1.2 3)에서 주기의 뒤에 나오는 ‘書名’이라는 용어를 본문의 ‘표제’라는 용어로 수정이 요구되며, 아울러 4.6.0.1 ③에서도 ‘총서의 서명관련정보’를 ‘총서의 표제관련정보’로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9) 4.4.3.2 5)의 나)에 제시된 표에서 ‘<60>’을 ‘<60甲子>’로 수정되어야 하며, 또한 7)의 기술 내용중 ‘반점(,)’이라고 표기하였는데 충칙의 1.0.5.10 7)에는 쉼표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쉼표(,)’로 수정이 요구된다.

(10) 4.5.1.2 15)에서 행을 달리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을 ‘가) 앞 부분이’, ‘나) 중간 부분이’, ‘다) 끝 부분이’ 등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독자들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편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11) 4.5.3.1에서 ‘2.5.3.1의 규정에 준한다’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를 ‘1.5.3.1의 규정에 준한다’라고 수정이 요구된다.

3.8 고서 목록규칙 제정기관의 일원화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문현자동화목록규칙(고서용)을 비교하여 보았다. 이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KCR 4 초안 고서기술규칙과 한국문현자동화목록기술규칙(고서용)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에서 KCR 4 초안의 편찬보고²⁾

2) 기술규칙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문현자동화목록 형식(KORMARC)의 사용을 고려하여 기존의 기술 방법을 일부 수정하였다.

에서도 보고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필자는 현재와 같이 ‘한국목록규칙’은 한국도서관협회(이하 ‘도협’)에서 제정하고 있고, ‘한국문현자동화목록기술규칙(고서용)’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국중’)에서 제정하는 등 동일한 내용의 목록규칙의 제정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단일화하여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도협은 우리나라 도서관계를 대표하는 기관이고, 국중은 국가대표도서관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도서관계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 오늘날 우리나라 일선 도서관의 목록환경이 카드목록 중심에서 대부분 MARC 중심으로 크게 바뀌었다. 따라서 도서관 현장에서는 도협에서 제정한 카드목록을 비롯한 인쇄목록 중심의 목록규칙보다는 국중에서 제정한 KORMARC의 의존도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일선 도서관의 의존도가 높은 KOMARC의 목록규칙을 국중으로부터 인수하여 도협에서 제정 또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3) 도협에서 제정한 목록규칙은 도서관 자료조직에 있어서 ‘헌법’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고, KORMARC은 자료조직을 위한 하나의 도구, 즉 ‘시행령’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자료조직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도협이 자동화 목록규칙을 제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4) 특히 고서의 경우는 그 유통의 폐쇄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어려움 등으로 말미암아 고서정보의 공유는 대단히 중요하며, 그 공유 또는 상호교환이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기술규칙의 표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5) 국중의 KORMARC를 인수하여 도협에서 제정하는데 있어 그 가능성을 살펴보면, ① 기술규칙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② KCR 4 초안, KORMARC(고서용) 기술규칙이 ISBD(A)를 준용하고 있어 서지 사항과 기술순서가 동일하며, ③ 각 사항의 요소 앞에 표시하는 구두점의 사용이 동일한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국중의 기존 KORMACR을 도협에서 인수하여

KCR 4 초안에 도입하여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KCR 4 초안이 도서관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는 실제적인 기술규칙이 되도록 하는데 일조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보완되어야 할 사항과 일부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고서의 경우 異名同書가 많이 나타나는 특징으로 인하여 통일서명의 기능이 한층 더 중요시되고, 자료 배열 등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통일표목을 포함한 각종 표목의 선정을 없애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고서의 완전한 서명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원의 우선순위를 권수제면 다음 권미제면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저자의 역조나 국적은 고서의 정리에 있어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그 기재를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외국에서 간사된 자료의 국명표시는 '간사지'에서 일관성 있게 기술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관심이 없는 책지에 대한 광곽의 크기에 관한 사항의 수정과 광곽이 없는 서적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귀중본에 관한 규칙의 보완이 요구된다.

(7) 11개의 일부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발견하였다(3.7의 내용 참조).

(8) 고서목록규칙 제정기관의 일원화가 요구된다.

참고 문헌

- 강순애. 1996. 「고문헌의 조직과 정보운용」. 서울: 아세아문화사.
국립중앙도서관 편. 2000. 「한국문헌자동화목록 기술규칙(고서용)」.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류부현. 1999. 국립중앙도서관 제공 고서용 기술규칙(안)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18(1).
박문열. 1999. 「古典資料組織論」. 清州: 파이이.
사공철 등편. 1996.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최정태, 양재한, 도태현. 1999. 「목록조직의 이론과 실제」.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2002. 「韓國目錄規則」 4版.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현영아. 1991. 古典籍의 形態記述에 관한 研究: 국제표준서지기술법(ISBD)의 형식을 중심으로. 「圖書館學」. 20.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
1992. 「ISBD(A):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older monographic publications(Antiquarian)」. IFLA.
The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Revision of AACR. 1998.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2nd ed. 1998 Revision」.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